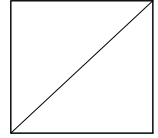


공 개



| | |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| 제 3 호 | 심 의 사 항 |
| 심 의 연 월 일 | 2022. 3. 29. (제 38 회) | |

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
심의회 운영위원회

| |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|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|
| 제출 연월일 | 2022. 3. 29. |

1. 의결주문

- 「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

2. 제안이유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9조 제1항에 따라,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인 「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」을 마련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현장중심 연구제도 개선절차의 의의

- ① 국가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 조성
- ② 연구기관과 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, 연구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고도화

나. 2022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

- ①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(과기정통부, '21.12~'22.2월)
 - 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제도 개선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 및 제도개선위원회 의견 수렴
* 주제별, 주체별, 권역별 및 정책전문가 의견 수렴
- ② 기본지침 마련 (과기정통부, '22.3월)
 - 현장 연구자 및 제도개선위원회 (3.11) 등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

다. 2022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

①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취지 현장 정착

- 부처별(전문기관 포함) 상이한 용어·절차·기준,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'혁신법')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사항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
 - 연구기관 내부규정·관행 등을 포함한 현장 연구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 점검
 -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의 적용범위가 확대*됨에 따라, 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
- * 출연(연) 기본사업, 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

②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

- 도전·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 유인체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
-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 제고를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등 검토
-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하고, 일반시민 등 기술수요자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

③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

-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및 연구윤리 확립 등 연구기관 자체 책임성 확보 지원
-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모색
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

④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

-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,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
-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잦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변화 횟수 최소화

라. 향후계획

- ① 연구제도 개선 의견 제출 (관계부처('22.4월), 연구현장('22.4월 ~ 5월))
 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- ② 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2.5월 ~ 8월)
 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제도개선위원회의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 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- ③ 연구제도 개선 (관계부처, '22.9월 ~)
 - '22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후속조치 실시

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(안)

2022. 3.

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목 차

| | |
|---|----|
| 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 | 1 |
| II. '22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 경과 | 2 |
| III. '22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 | 3 |
| 1. 범부처 협력을 기반으로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취지 현장 정착 ... | 4 |
| 2. 선도적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기반 강화 | 5 |
| 3.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강화 | 6 |
| 4. 제도개선의 원칙 확립 | 7 |
| IV. '22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 | 7 |
| 붙임.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 양식 | 9 |
| 참고1. 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현장의견수렴 추진 경과 ... | 11 |
| 참고2. 2021년 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 결과 | 12 |

I.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의의 및 근거

1 의 의

- 선도적 연구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체계화와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을 조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제도*(이하 '연구제도') 개선
 - *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그 하위규정, 각 부처의 소관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·시책 등을 포괄
 -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고 사회문제 해결 등 과학기술의 파급효과가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
- 국가연구개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높이고, 연구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보다 나은 연구환경을 달성하는 법 취지의 지속 추진
 - 각 부처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'혁신법') 취지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며, 연구기관·과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체감형으로 제도 고도화

2 운영 근거 :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제28조~제30조

- **(법 제28조)** 정부는 매년 이해관계인·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, 누구든지 연구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음
- **(법 제29조)** 연구제도 개선의 체계화된 절차 마련

- **(제1항)** 과기정통부는 당해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작성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3월31일까지 관계부처에 통보
- **(제2항)**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지침에 따라 제도개선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4월30일까지 제출
- **(제3항)**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 8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통보
- **(제4항)** 관계부처별로 다음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

- **(법 제30조)** 연구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규정과 이에 근거한 활동에 대해 정부에서 개선 권고(과기자문회의 심의)하고, 이행 실태 확인·점검

Ⅱ. '22년도 연구제도 개선절차 운영경과

① 기본지침 마련을 위한 의견 수렴 및 제도개선위원회 출범

- 연구현장 애로 파악 및 국가연구개발의 도전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산·학·연 전문가의 의견 수렴

<연구현장 의견 수렴 경과('21.12.~'22.2.)>

- (주제별) 국제협력, 도전혁신, 사회문제 해결 등 연구 성격에 따라 의견수렴
- (주체별) 산학협력단, 출연연, 기업 등 연구개발기관 특성에 따라 의견수렴
- (권역별) 서울충청강원, 호남, 영남 등 각 권역의 전문가 의견수렴
- (기 타) 정책 전문가 등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

- 제도개선 전 과정에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산·학·연 전문가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범 ('22.1월)

- ☞ 제도개선위원회·과기정통부가 함께 제도개선 기본방향 및 연구현장 의견 우선순위 등을 검토

② 기본지침 마련 (과기정통부, '22.3월)

- 현장 연구자·제도개선위원회 등 정책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2022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을 마련

* 제도개선위원회 상정 및 의견 검토 (3.11)

<제도개선위원회 주요 검토 의견>

- 다양한 혁신 주체의 참여, 예산 운영의 유연성 확보 등 사업별 특성을 반영
- 자율성 확대 및 투명성·책임성 담보를 위한 제도개선 지향
- 혁신법 이후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를 해소

Ⅲ. '22년도 제도개선 기본지침

목표

선도 연구의 기반이 되는 연구자 친화적 R&D 제도 정착

추진 방향

① 범부처 협력으로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취지 현장 정착

- 1) 혁신법 취지에 맞는 부처별 규정정비
- 2) 혁신법 운영 현황 현장 점검
- 3) 연구주체·사업 특성에 따른 애로 사항 해소

② 선도적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확립

- 1) 유인체계 등을 통한 도전·혁신성 제고
- 2)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환경 개방성 확립
- 3)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 강화

③ 선도적 연구환경 조성 및 연구자 지원 강화

- 1) 선도적 연구문화 및 연구규범 조성
- 2) 청년연구자 지원 확대
- 3) 간접비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한 연구지원 모색

④ 제도개선 원칙 확립

- 1) 자율성과 책임성 담보를 위한 원칙 확립
- 2)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

1) 혁신법 취지에 맞는 부처별 규정 정비

- 부처별 상이한 용어·절차·기준, 국가연구개발혁신법(이하 '혁신법') 대비 완화할 수 있는 추가 제한, 혁신법 취지에 맞지 않는 조항 등 정비
 - 각 부처는 혁신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비한 과제 또는 정비할 과제를 포함하여 범부처 정책 정합성을 제고
 - 「연구개발혁신법」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전문기관의 규정 및 업무 관행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개선 추진

< 부처별 및 전문기관 R&D 관리규정 점검 추진 계획 >

- ▶ (‘22.1~2월, 과기정통부) 각 부처에 소관 규정 점검계획을 안내하고 자체점검 요청, 각 전문기관에 자체규정 현황 및 애로사항 등 요청
- ▶ (~’22.3월, 각 부처·전문기관) 자체점검 결과(각 부처) 및 자체규정 현황, 애로사항 등 제출
- ▶ (~’22.6월, 과기정통부) 부처·전문기관별 제출자료 검토(전문가 회의 등) 및 환류
 - 부처·전문기관별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 추진
 - 부처별 점검결과 등에 대한 환류 실시, 정비 필요사항 개선 등 요청
- ▶ (’22하, 과기정통부) 정비 이행상황 공유점검, 부처·전문기관별 애로사항 등 협의 지속 추진

2) 혁신법 운영 현황 현장 점검

- 혁신법 취지에 맞게 현장에서 혁신법이 운영되는지를 점검
 - 온라인 제도개선 제안*을 통해 연구기관 내부규정·관행 등을 포함하여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분야별 민간 전문가(산·학·연)가 검토
- ※ IRIS를 통해 혁신법과 부정합한 연구기관 내부규정을 포함하여 제도개선사항 발굴(’22.4.~6.)

3) 연구주체·사업특성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

- 과거 공동관리규정 대비 혁신법이 적용범위가 확대*됨에 따라, 그 특성 등이 반영되지 못해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 해소
 - * 출연(연) 기본사업, 국립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 등
- 현장 요구 중 시급한 사항은 제도개선(안) 확정 전에도 선(先) 제도개선

1) 유인체계 등을 통한 도전·혁신성 제고

- 도전·혁신적 연구수행에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수행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유인체계 및 사업 체계 개선 검토
 - 도전·혁신적 연구 수행 시 동일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경로 탐색 및 맞춤형 연구수행 경로 등이 가능한 방안 등 검토

2)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연구환경 개방성 확립

- 국제협력의 활성화 등 국가연구개발의 개방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사용 등의 유연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 검토
 - ※ (예시) 해외 우수 연구자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국내 전임교원 부임 시 인센티브 지급 등
 - 단,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대외환경을 고려하여 개방성을 확대하면서도 중요정보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은 강화

<국가연구개발 사업 보안고시(8개부처공동) 주요 내용 (규제심사중)>

- ▶ 보안과제분류 위원회를 통해 보안과제 여부를 분류하고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 제공하는 등 절차 마련
- ▶ 외국인이 보안과제에 참여하거나, 보안과제 수행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연구자가 외국과제에 참여하거나 외국인과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접촉 시 보고하는 등 관리 강화
- ▶ 성과 실시 시 제3자 실시 금지 및 기술이전 시 보안 의무 이전 명시 (외국 이전실시의 경우 장관 승인)
- ▶ 보안수당 등 보안과제에 대한 인센티브 등 규정, 보안사고 조사절차 등

3) 사회문제 해결 등 국가연구개발의 활용성 강화

-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경우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검토
 - R&D 기획, 수행, 평가 등 전 과정에서 과학기술 전문가 뿐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기술 수요자 및 인문사회 전문가 등의 역할 강화 지원
 - ※ (예시) 일반시민의 연구 참여 시 비용 계상 등의 편의성 제고
 - 다양한 기업의 사회문제 해결 기술개발 참여를 촉진 (예 : 대기업·공기업 등)

1) 선도적 연구문화 및 연구규범 조성

- 신뢰를 바탕으로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선도적 연구문화를 조성·확산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
 - 연구현장 자체 책임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윤리 등 연구규범 조성 지원

<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>

- ▶ 연구윤리 각 분야별 일반적인 개념정의, 행동양식 및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를 포함하여 제시

| 분야 | 주요내용 |
|----------|--|
| 연구진실성 | 1. 연구진실성 개념 2. 연구진실성 확보 노력 3. 연구진실성 보호·관리 체계 |
| 학문교류 | 1. 학문교류 개념 2. 학문교류의 진실성 3. 정보의 보호 |
| 인간동물실험 | 1.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 개념 2. 인간 대상 연구 규정 및 책무 3. 동물 실험 연구 규정 및 책무 |
| 건전한연구실문화 | 1. 건전한 연구실 문화 개념 2. 연구자 권익보호 3. 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4. 연구실 내 소통 강화 5. 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|
| 연구윤리 교육 | 1. 연구윤리 교육 목적 2. 연구윤리 교육 내용 3. 연구윤리 교육 방법 4. 교육 시기 |
| 예시규정 | ▶ 연구기관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모범규정 예시 |

- ▶ '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 이후 이와 정합성을 맞춘 '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' 분야를 반영하여 연구윤리 길잡이 업데이트 추진 ('22.5월)

2) 청년 연구자 지원 확대

- 학생 및 박사후 연구자에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모색
 - ※ (예시) 과기정통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상향 검토,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인식 제고, 감액 최소화 등

<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개정 검토(안) 예시 >

| 구분 | 현행 | 개정안(예시) | 비고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학사과정 | 월 100만원 이상 | 월 130만원 이상 | 동 금액 이상으로 연구개발기관 별 자율 설정 |
| 석사과정 | 월 180만원 이상 | 월 220만원 이상 | |
| 박사과정 | 월 250만원 이상 | 월 300만원 이상 | |

3) 간접비 체계 개선방안 모색

-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역할 강화를 위한 간접비 원가산출방식 개선 및 신뢰성 높은 회계자료 수집을 위한 회계시스템 개선 방향 검토

1) 자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의 확립

- 제도개선이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 원칙 확립에 집중하고,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을 우선 검토

2) 신속한 애로해소 등 제도개선의 실효성 제고

-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되, 잦은 제도변화로 인한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규정 개정 시기는 일원화하여 제도변화 횟수 최소화

IV. '22년도 제도개선 향후계획

① 제도개선 의견제출 (관계부처('22.4월), 연구현장('22.4월 ~ 5월))

- 연구현장, 부처(전문기관) 등은 기본지침을 고려한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(붙임)'를 작성하여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 제안
 - 법령 시행 이후 제도개선 필요 사항 및 기본지침에 제시된 기본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안
- 기본지침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도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에서 제안하는 제도개선 과제 및 개선방안 적극 반영

< 상시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>

- 온라인 소통창구(익명제안 가능)를 통해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
 - ※ IRIS 활용, 「연구개발혁신법」 해석 문의 창구와 별도 운영
- 연구현장의 공감도, 시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개선안 반영 여부 결정

② 연구제도개선안 검토·수립 (과기정통부, '22.5월 ~ 8월)

- '제도개선 의견 제출서'를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고,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제도개선안(과기자문회의 심의) 수립·통보
- 연구현장, 부처 등에서 제안한 과제에 대해 검토한 결과, 중·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'23년도 이후 제도개선안에 반영

③ 연구개발 제도개선 (관계부처, '22.9월 ~)

- '22년도 연구제도 개선안에 따라 부처별로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 등을 개정하는 등 후속조치

※ 작성 방향

① 「연구개발혁신법」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안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에 따라 신설되거나 개선된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에 관한 제안
 - ※ 법 시행 이후 규정 변화가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포함
- 「연구개발혁신법」과 부합하지 않는 부처별 R&D규정, 전문기관의 업무 관행, 연구기관별 내부규정·관행에 대한 개선의견

② 관계부처·연구현장에서 개선 수요가 있는 제안

- 범부처적인 적용이 필요하거나, 다양한 유형의 연구분야 및 연구기관에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개선 제안
- 부처별·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항 제안
- 창의적·도전적 연구수행을 저해하거나, 창출된 성과의 활용을 저해하는 연구제도의 규제요인에 대한 개선 의견

③ 구체적인 제안

- 제도개선 제안의 이행을 위한 구체성에 대하여 검토

○○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제출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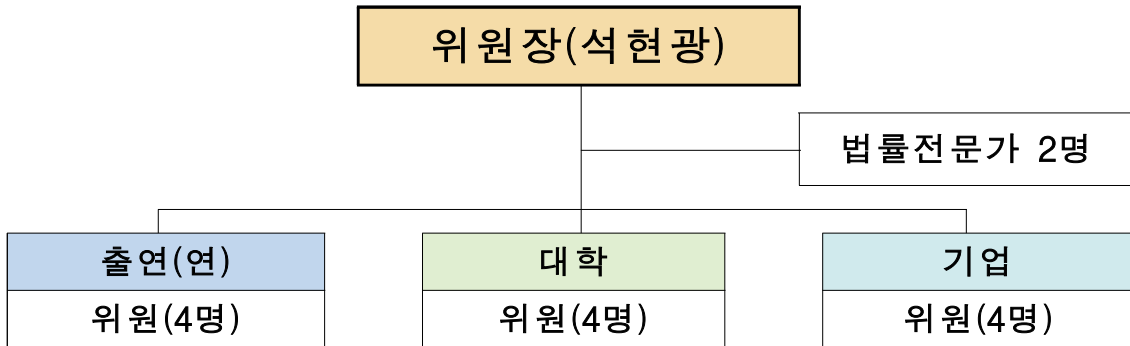
| 구분 | 부처명 | 부서명 | 직위 | 이름 | 전화번호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|------|
| 주관기관 | ○○부 | ○○국 ○○과 | 국장 | - | - |
| | | | 과장 | - | - |
| | | | 사무관 | - | - |
| 유관기관 | ○○진흥원 | | 본부장 | - | - |
| | - | | - | - | - 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1. 제도개선 제안명: | |
| 2. 관련 근거 | ※관련 법령 및 자체 규정 등 |
| 3. 제안 목적 | |
| 4. 현황 및 문제점 | ※ 제도운영 현황 및 문제점 요약 기술 |
| 5. 발굴경로 | □ 연구자 민원, □ 정책연구, □ 자체조사(설문, 통계 등), □ 업무처리과정 중 자체 발굴, □ 기타 ※선택한 항목 관련 자료를 [붙임]으로 제출 |
| 6. 제도개선 의견 | ※ 제도 개선 방안 요약 |
| 예시 | ※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 상황을 구체적으로 예시 |
| 7. 규정 개정안 | ※ 규정명, 조항, 전후대조가 가능하도록 기재 |
| 8. '22년도 제도개선 방향 과의 관련성 | |
| 9. 기대효과 | |

※ 표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1~9번 항목을 구분하여 자유형식 작성 가능

□ **제도개선위원회 구성·운영 개요**

- (구성) 총 15명으로 대학, 출연(연), 기업 3개 분과로 구성
 - ※ 위원장 1명, 분과별 위원 4명, 법률전문가 2인 등 총 15명으로 구성
- (운영) 정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현장의 민간전문가 시각에서 검토하고(~'223월),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의 시의성·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도출 및 개선안 검토(~'228월)
 - ※ '22년 1월 26일 출범식을 시작으로 약 7개월간 운영 (1월~8월)



□ **주요 추진경과**

- (제도개선위원회) 제도개선 기본 방향 설정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의견 및 혁신과제(안)을 도출('22.1~2월)
- (연구현장 간담회) 연구현장 제도개선 수요 반영을 위해 사업별(도전혁신, 사회문제, 국제협력), 산학연, 권역별 전문가 간담회 등 실시 ('21.12~'22.2월)
- (제도개선위원회) 위원회 회의를 통해 연구현장 의견수렴 결과 및 혁신과제(안)을 토대로 시급성·중요성을 검토('22.3월)

□ **향후 계획**

- 온라인 연구현장 의견수렴('22.4~5월) 결과 검토, 시의성·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사항 등을 선정 및 분류 ('22.6~8월)

| 주요 추진과제 | 관련법령 제·개정 |
|--|--|
| ① 간접비 집행이 어려울 경우 과제 종료 후 2년까지 저작물 출판비용 직접비 지원 강화 |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완료 ('21.12) |
| ② 타 학교 학생까지 학생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사용의 유연성 확대 | 시행령 개정 완료 ('21.12)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완료 ('21.12) |
| ③ 다양한 연구노트 형식을 허용하여 연구노트 작성·관리의 자율성 제고 | 연구노트 지침 개정완료('21.12) |
| ④ 연구실 운영비 사용의 자율성 강화 검토 | 혁신법 매뉴얼 반영 검토 중 |
| ⑤ 연구비 선집행 제도의 현장안착 촉진 | 혁신법 매뉴얼 개정 ('22.상) |
| ⑥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포기절차 명확화 | 혁신법 매뉴얼 개정 ('22.상) |
| ⑦ 경쟁형R&D 활성화를 위해 중단근거 마련 | 시행령 개정완료('21.12) |
| ⑧ 국제 R&D협력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국제공동연구비 계상허용 기관 확대 | 시행령 개정완료('21.12) 연구비사용기준 개정 완료 ('21.12) |
| ⑨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관리 체계화 | 보안고시 제정 추진중 ('22.상) |
| 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비용 집행 근거 마련 | 시행령 개정완료('21.12) |
| ⑪ 신진연구자의 인건비 지급 여건 개선 (대학의 박사후 연구자가 연구 중단 시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 허용) | 시행령 개정완료('21.12) |
| ⑫ 학생산재보험비 간접비 계상 등 연구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| 시행령 개정완료('21.12) 연구비사용기준 개정 완료 ('21.12) |
| ⑬ 단순 부정행위에 대한 참여제한 처분기간 합리화 | 시행령 개정완료('21.12) |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성과평가정책국 연구제도혁신과

| | |
|-----|--|
| 담당자 | 박경미 사무관 |
| 연락처 | 전 화 : 044-202-6954 E-mail : parkkm@korea.kr |